



2008년 1월 1일부터 여러분의 호적이 이렇게 바뀝니다

첫째, 가족으로 구성된 호적에서 한 사람마다 작성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뀝니다.

호적 제도	호적과 비교	가족관계등록 제도
호적(부)		가족관계등록(부)
호적등 · 초본 (1가지)		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(5가지)
본적 폐지		등록기준지 신설
취적		가족관계등록창설

둘째, 본적 제도가 없어지고,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제도가 시행됩니다.

셋째,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본인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목적에 따른 증명서

증명서의 종류	기재 사항	
	공통 사항	개별 사항
가족관계 증명서	본인의 등록기준지 · 성명 · 성별 · 본 ·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	부모, 배우자, 자녀의 인적사항(기재 범위 - 3대(代)에 한함)
기본 증명서		본인의 출생, 사망, 개명 등의 인적 사항(혼인 · 입양 여부 별도)
혼인관계 증명서		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· 이혼에 관한 사항
입양관계 증명서		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· 파양에 관한 사항
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		친생부모 ·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· 파양에 관한 사항

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원칙이 반영된 가족제도,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?

1.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협의제도 시행

Q. 2008. 1. 1.부터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나요?

혼인신고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신고하고 자의 출생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합니다.

단, 협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2.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 변경 제도 시행

Q.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의 경우,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?

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경우

⇒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, 자녀의 성 변경을 신고하시면 됩니다. (이 경우 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어요.)

새 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

⇒ 그 자녀가 15세 미만이어야 하고,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하여 법원의 친양자입양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.

3. 친양자입양 제도의 시행(단, 양자가 만 15세 미만자에 한해)

Q. 친양자입양과 일반입양은 어떻게 다른가요?

	일반입양	친양자입양
성립요건	협 의	재 판
자녀의 성과 본	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	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
친생부모와의 관계	유 지	종 료
효력	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 (친생부모와의 관계도 친권을 제외하고 변함없음)	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 (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종료)

가족관계증명서 무료 시범 발급

◎ 기간: 2007. 11. 2. ~ 2007. 11. 22.

◎ 장소: 시·구청 및 읍·면·동사무소

◎ 가족구성원이 빠진 경우에는 호적관서에 신고



"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."

대법원